「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5월 2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5월 3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5월 10일

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행정안전국장 강신석

나. 제안이유

○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의3(민원실의 운영) 규정 신설로 민원실의 운영방법이나 시간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미시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로 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 (안 제1조~제3조)
- O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O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O 민원실의 연장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O 현장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O 민원상담인의 위촉 및 배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라. 참고사항

- O 관계법령
 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민원실의 설치)
 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의3(민원실의 운영)
 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(민원실)
 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조(근무시간 등)
- O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O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총무과와 합의되었음
- O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조례안은

•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의3(민원실의 운영) 규정 신설로 민원실의 운영방법이나 시간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미시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.

○ 검토 결과,

• 민원실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효율

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 여할 것으로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 론 요 지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